

2011. 12. 21. (수) 10:00

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제3차 본회의

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총무위원회

【목 차】

| | |
|--|----|
| 1.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----- | 1 |
| 2.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 | 3 |
| 3.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---- | 5 |
| 4. 거창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 | 7 |
| 5.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| 9 |
| 6.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---- | 11 |
| 7.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----- | 14 |
| 8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----- | 17 |

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1. 11. 16.

나. 제출자: 안철우·강철우·조선제·류영수·이애숙 의원

다. 회부일자: 2011. 11. 17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5.

마. 의안번호: 제2011 - 76호

2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 등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 주요내용

- 가. 의원위원회·군수는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 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(안 제3조)
- 나.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재원조방안, 추계의 상세내역, 관련 의견 등을 포함하여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 동안의 비용에 대한 추계여야 함. 다만,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함(안 제5조)
- 다. 재원조달방안은 의존수입, 자체수입,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(안 제6조)
- 라.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함(안 제7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의안의 증가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결국 지방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
- 조례 등 각종 의안 발의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의안 심사의 합리성 강화,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,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
- 현재 경남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도내 시·군에서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.
-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1. 24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1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5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87호

2. 제안이유

- 금원산자연휴양림 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직속기관 등의 소재지를 기존의 지번방식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산림녹지과장 분장사무 중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함(안 제3조)
 - ※ 금원산자연휴양림 수탁기간 만료(2011.12.31.)
- 나. 직속기관, 사업소 등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(안 제5조, 제11조, 제14조, 제17조, 제20조, 안 별표)
 - 농업기술센터: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
 -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(별표 참조)
 - 상하수도사업소: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-68
 - 교육문화센터: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

- 거창사건관리사업소: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
- 시설관리사업소: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-36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금원산자연휴양림 수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분장 사무를 삭제하고, 「도로명주소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지번방식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1. 24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1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5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88호

2. 제안이유

-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고 행정수요가 감소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며,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신규인력을 증원 및 재배치하는 등 행정수요에 적합하게 정원을 관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무원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

- 공무원 정원: 증 5명
 - 현행: 645명(본청270명, 의회14명, 직속기관24명, 사업소54명, 읍37명, 면146명)
 - 조정: 650명(본청269명, 의회14명, 직속기관25명, 사업소54명, 읍39명, 면149명)
- 일반직 6급 이하: 증 24명(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15명, 기능직 일반직 조정 4명, 사회복지인력 증원 5명)
 - 현행: 529명(본청234명, 의회8명, 직속기관75명, 사업소38명, 읍33명, 면41명)
 - 조정: 553명(본청234명, 의회8명, 직속기관91명, 사업소38명, 읍35명, 면47명)
- 별정직: 감 15명
 - 현행: 16명(본청1명, 직속기관15명)
 - 조정: 1명(본청1명, 직속기관0명)

○ 기능직: 감 4명

- 현행: 68명(본청32명, 의회6명, 직속기관6명, 사업소15명, 읍4명, 면5명)

- 조정: 64명(본청31명, 의회6명, 직속기관6명, 사업소15명, 읍4명, 면2명)

나.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2)

○ 현행: 6급 9% 이내, 7급 21% 이내, 8급 21% 이내, 9급 49% 이상

○ 조정: 6급 10% 이내, 7급 23% 이내, 8급 23% 이내, 9급 44% 이상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보건의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 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고,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신규인력을 증원하며, 행정수요가 감소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등 행정수요에 적합하게 정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1. 24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1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5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89호

2. 제안이유

- 「도로명주소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지번방식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(안 별표)

- 거창군청 : 상림리 64-1 ⇒ 중앙로 103
- 거창읍사무소: 상림리 60-3 ⇒ 거열로 90
- 주상면사무소: 도평리 713 ⇒ 주곡로 655
- 웅양면사무소: 노현리 223-2 ⇒ 웅양로 1431
- 고제면사무소: 농산리 754-3 ⇒ 입석1길 14
- 북상면사무소: 갈계리 1391-3 ⇒ 송계로 710
- 위천면사무소: 장기리 511-2 ⇒ 원학길 324
- 마리면사무소: 말흘리 247-4 ⇒ 빼재로 18
- 남상면사무소: 무촌리 632-2 ⇒ 인평길 36

- 남하면사무소: 무릉리 991-1 ⇒ 영서로 41
- 신원면사무소: 과정리 187-7 ⇒ 신차로 3067
- 가조면사무소: 마상리 345-3 ⇒ 장군봉1길 8
- 가북면사무소: 우혜리 1888 ⇒ 용암로 17-16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
- 안 [별표] 에서 거창군청은 거창읍 상림리 64-1번지에서 거창읍 중앙로 103 으로, 그 밖에 거창읍 등 11개 읍·면의 지번방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음.
- 이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1. 16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1. 1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5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77호

2. 제안이유

- 출산장려지원, 전입세대지원의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임신부의 불안감 해소, 태아·영유아 건강증진, 전입세대의 편의도모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시책을 추진하여 군의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산장려지원의 지원규모·대상을 확대함(안 제5조, 제6조)

- 임신부 철분제 지원 ⇒ 임신부 영양제 지원
- 엽산제: 5개월분 지원 ⇒ 임신시까지 지원
-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: 200만원 이내
⇒ 셋째아이 이상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 지원: 250만원 이내
- 셋째아이 이상 태아·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격 완화
: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
⇒ 결혼이민자의 경우를 추가함

나. 지원방법을 개선함(안 제7조, 제20조)

- 임신부의 영양제: 매월 1개월씩 7개월간 지급
⇒ 최대 7개월분을 지급

○ 엽산제: 가임여성 등록시 5개월분 일괄지급

⇒ 임신부는 개월수 산정하여 지급

가임여성은 5개월분 일괄지급하고 임신 될 때까지 추가지급 가능

○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: 50리터 20매 이내

⇒ 20리터 45매 이내(다만, 지원금액 내에서 종량제봉투규격 변경지원 가능)

다. 유명무실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조항 삭제함(안 제21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지원, 전입세대지원의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임신부의 불안감 해소, 태아·영유아 건강증진, 전입세대의 편의도모 등 효율적인 인구시책을 추진하여 군의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2. 07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2. 0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5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90호

2. 제안이유

- 현행 군세 감면의 적용시한이 2011. 12. 31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(안 제1조)
- 나.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을 규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 -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(안 제3조)
 -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% 추가 감면(안 제4조)
- 다. 적용시한 종료에 따른 감면 규정을 삭제함(현행 제7조)
 -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

라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된 감면 규정을 삭제함

-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3항(현행 제4조)
-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: 같은 법 제17조의2(현행 제5조)
-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: 같은 법제58조의2(현행 제9조)
-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: 같은 법 제85조의2(현행 제10조)
-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: 같은 법 제60조제4항(현행 제11조)
-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: 같은 법 제56조제3항(현행 제12조)
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: 같은 법 제58조제4항(현행 제15조)

마. 감면 적용시한의 연장: 2014. 12. 31

※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: 2012. 12. 31(안 제3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된 내용을 삭제하고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(종교단체 의료기관은 2012. 12. 31)까지로 연장하며
- 군세의 감면과 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도 내 시·군에서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.
-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2. 07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2. 0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5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92호

2. 제안이유

- 2011년 6월 준공된 거창문화원사를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법인에게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① 위탁시설

- 가. 시 설 명: 거창문화원사
- 나. 위 치: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-14
- 다. 규 모: 연면적 2,579.67㎡(지하1층, 지상3층)
- 라. 주요시설
 - 지하: 연습실, 창고, 전기실, 발전기실, 물탱크실, 기계실
 - 1층: 원장실, 회의실, 서고, 향토연구실, 사무실, 공연장, 전시 및 휴게공간, 로비
 - 2층: 교육실 2, 다목적 강당, 간이식당
 - 3층: 사무실(대) 2, 사무실(소) 5

② 운영분야

가.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

- 시설물 관리 및 보수,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최상의 상태 유지
- 거창문화원사 시설 및 장비, 비품 관리 및 운영
- 지속 운영 가능한 연간 시설물 운영 계획 수립
- 군민 문화혜택을 위하여 문화원사를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

나. 관리위탁 비용 및 사용료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이 관리위탁 비용 지원
- 「거창문화원사 관리·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공연장 등의 사용료를 문화원에서 직접 징수하고 정산 후 수익금에 대하여는 익년 관리운영비 교부 시 차감

③ 위탁기관: 거창문화원

- 「거창문화원사 관리·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에 근거함

④ 위탁조건

가. 위탁기간: 2011. 9. 1. ~ 2016. 8. 31./ 5년간

나. 관리위탁 조건

- 관리 및 시설 유지 책임, 승인 없는 시설물 변경 금지
- 사고예방의무, 귀책사유 민·형사상 책임, 법률 및 조례 준수
- 관리위탁 시설물에 대한 도난·화재 예방 책임
- 계약 해지 시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반환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거창문화원사는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-4에 지하1층, 지상3층 연면적 2,579.67㎡ 규모로서 업무시설, 공연장, 연습실, 교육실, 서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

- 본 시설은 사업비 47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11월에 착공하여 2011년 6월에 준공하였고 향후 전통문화의 보존·전승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군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“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”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, 거창문화원사는 “ 거창문화원사 관리 및 거창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” 제18조에 문화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.
- 우리 군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직영이 어려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거창문화원에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. 12. 07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. 12. 0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. 12. 15.
- 마. 의안번호: 제2011 - 93호

2. 제안이유

-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해서는 기·예능의 전문성 확보, 많은 회원들이 전수활동지원, 민속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등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① 위탁시설

- 시설명: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
- 위치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-14
- 규모: 부지12,382㎡, 건물951.59㎡, 논밭, 야외공연장
- 주요시설
 - 지하1층(141.6㎡): 발전기실, 펌프실, 전기실 등
 - 지상1층(679.49㎡): 사무실, 회의실, 전시실, 연습실, 창고 등
 - 체험동3동 130.5㎡, 공연장, 논밭608㎡, 주차장9면

② 운영분야

가)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

- 시설물관리 및 보수,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최상의 상태유지
-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시설 및 장비, 비품 관리 및 운영
- 지속운영 가능한 연간 시설물 운영계획수립
-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

나) 관리위탁 비용 및 사용료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이 관리위탁 비용
-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습실 등의 사용료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직접 징수하고 정산 후 수입금에 대하여는 익년 관리운영비 교부 시 차감

③ 위탁기관

-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

④ 위탁조건

가) 위탁기간: 계약일로부터 3년

나) 위탁조건

- 관리책임 및 시설유지, 승인 없는 시설물 변경금지
- 사고예방의무, 귀책사유 민형사상책임, 법률 및 조례 준수
- 관리위탁시설물에 대한 도난·화재예방 책임연간 시설물 운영방안
- 계약해지 시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반환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-4에 지하1층, 지상 1층, 체험동3동 연면적 951.59㎡ 규모로서 사무실, 회의실, 전시실, 연습실, 체험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
- 본 시설은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11년 6월에 준공을 하였고 향후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- 군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“ 거창군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”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,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“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” 제14조에 무형 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.
- 우리 군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직영이 어려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